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2084

2024년 11월 2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4년 8월 12일

다. 회 부 일 : 2024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27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글로벌도시정책관)

- 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한국사회 정착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상담·문화교류 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서울특 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에 의거 시의 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 재 지 : (교육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시설규모 : 문래교육장(765*m*²)
- 주요시설 : 강의실, 강당, 휴게실, 상담실 등
- 인력운영 : 7명(센터장 1, 교육·문화사업 2, 상담사업 1, 회계·행 정 1, 취업지원 1, 주말반 운영 1)
 - ※ 운영시간 : 평일 9~18시(주말도 행사 등에 의해 필요시 운영)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1.~ 2027.12.31.)
- 위탁업무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업일체
 - ·교육지원(한국어/검정고시/학습 멘토링) 및 문화교류를 통한 적응 지원 등 중 도입국청소년들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
 - · 상담사업 등을 통한 심리 · 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소요예산 : 676.252천원('25년도)
 - 인건비 375,044천원, 사업비 196,217천원, 운영비 104,992천원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4. 7. 19.)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상담·문화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업 무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 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및 제 18조의 2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7조·18조 및 20조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9. 26.>
-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 지원
-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다문화가족지원법 10조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제목개정 2015. 12. 1.]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시기(2024.12.31.)가 도래함에 따라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이하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3년간 재위탁(2025.1.1.~ 2027.12.31.)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1)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검토 내용

(1) 중도입국청소년 정의 및 현황

○ '중도입국청소년'이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결혼, 취업 등으로 부모를 따라 입국한 국제결혼 자녀와 이주노동 가정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성장 도중 국내로 입국하여 한국어 사용이 익숙지 않고, 청소년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문화와 교육 적응에 어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려움을 겪고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고 있으며,²) 국내로 이주한 이후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정책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 법무부)',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등을 수립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기본계획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의, 통계기준 등의 차이로 명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

〈중도입국청소년 정의 및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 의	현 황		
	* 외국인주민 자녀 내에서 국적취득자녀 / 결혼이민자 자녀	2020.11.	3,297	
행정안전부	중 국적미취득 만18세이하 미성년자녀로 구분	2021.11.	3,481	
	* 통계기준은 매년 11월 전년도 11월 기준 자료 발표.	2022.11.	3,517	
여성가족부	* 본인의 생애에서 한국보다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더 많은	2015.12.	12,782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로 구분 * 통계기준은 3년에 1번으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2018.12.	6.519	
	결과 발표	2021.12.	3,304	
	* 결혼이민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 본국에서 살	2022.06.	56,022	
법무부	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	2023.06.	62,366	
	* 통계기준은 매년 3월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 발표	2024.06.	71,176	
	* 다문화학생 내에서 국제결혼가정자녀/외국인자녀	2020.04.	9,151	
교육부	(국내출생자녀/중도입국자녀)로 구분	2021.04.	9,427	
	* 통계기준은 매년 3월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 발표	2022.04.	9.938	
	*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2020.11.	3,297	
서울특별시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다문화가족	2021.11.	3,481	
	* 통계기준은 행정안전부 자료 인용	2022.11.	3,517	

²⁾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서울시에서는 관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및 다문화가족을 중도입국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을 기본 자료로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중도입국청소년은 2022년 기준 3.517명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 운영 현황

○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상담·문화교류 사 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 시설 개요〉

- ■설립년도: 2022년 1월 1일
- ■수탁기관: 재단법인 스마트교육재단(대표자 : 감경철)
- 위탁기간: 2022.1.1. ~ 2024.12.31.(3년, 공개모집)
- ■주요사업: 중도입국 청소년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상담·적응 프로그램 제공, 신규이용자 유치 활성 화 및 센터 인지도 제고,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허브 역할 수행
- 위탁사무 운영현황
- .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 규 모: 765m²
- . 인력 운영 : 5명(센터장 1명, 선임 1명, 팀원 3명)
- 위탁기간 연도별 예산현황(민간위탁금)

연 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766,590천원	746,220천원	755,448천원

- ■재위탁기간: 2025.1.1. ~ 2027.12.31.(3년, 공개모집)
- ■소요예산 : 676,252천원

(인건비 : 375.044천원, 사업비 : 196,217천원, 운영비 :104, 992천원 등)

○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의 설치 과정과 연혁을 살펴보면, 최초에는 서울시(장소제공: (구)서울의료원)와 기업(재원조달: 현대차정몽구재단), 민간단체(운영법인: (사)한국다문화센터)의 3자 협력체제로 '서울온드림다문화

가족교육센터'를 설치(2011.12월)하여 3년간 운영함. 2015년부터는 '서울온드림교육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정몽 구재단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됨

○ 이후 민관협력이 종료(2021.12.31.)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사회서비 스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사업 방식을 전환 (2022.1.1.)하였고,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재)스마트교육재단'이 수 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 민간위탁으로 사업 방식이 전환된 이후,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는 신규이용자 유치(실인원 2022년 281명 → 2023년 437명), 학교 밖 청소년 공교육 진입(23명), 검정고시 지원(8명), 진로탐색(559명), 다국어상담(1,014명), 문화예술동아리(1,672명) 활동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 사업 추진 실적〉

- 신규 이용자 156명 증가(실인원 2022년 281명 → 2023년 437명)
- 학교 밖 청소년 공교육 진입 23명, 검정고시 합격 8명 및 한국학교 입학 6명
- 진로탐색 559명 및 다국어상담 1,014명 등
- 문화예술동아리 1,672명, 한국문화이해 278명 및 송년발표회 112명 등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유관기관 회의체 참여 등

(3)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 운영 성과

○ 2022년 최초 민간위탁 이후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서울생활 정착을 위해 ▲수준별 한국어교실 및 검정고시대비반 운영, ▲진로탐색과 다국어 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서 안정을 위한 문화예술동아리 및 송년발표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최근 2년 사이에 신규 이용자수가 증가(실인원 : 281명(2022년) → 437명(2023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 이용자 현황〉

연도 합계		연령별 분포					학적별 분포				국적별 분포			
	13세 이하	14~16 세	17~19 세	20세 이상	재학생	외국 대학	자 다 다 학	입학 예정	학교밖 청소년	중국	베트남	미국	기타	
2023	437 명	190 명	121 명	87 명	39 명	207 명	0명	9 명	0명	221 명	279 명	22 명	16 명	120 명
	(100%)	(43.5%)	(27.7%)	(19.9%)	(8.9%)	(47.4%)	(0%)	(2.1%)	(0%)	(50.6%)	(63.8%)	(5.0%)	(3.7%)	(27.5%)
2022	281명	68명	77명	97명	39명	172명	3명	0명	4명	102명	165명	31명	12명	73명
	(100%)	(24%)	(27%)	(35%)	(14%)	(61%)	(1%)	(0%)	(1%)	(36%)	(58.7%)	(11.0%)	(4.3%)	(26.0%)

 다음으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의 전략목표 달성도를 살펴보면 ▲한 국어교실, ▲다국어 상담, ▲문화예술동아리 등 13개 성과지표에서 매년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모든 목표치가 단순히 참여자 수만 을 측정하고 있어 운영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요구 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 연도별 성과지표 및 실적〉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구분	2022년	2023년
교육지원	한국어교실	한국어교실	명, %	목표치	11,520	15,173
				실적치	14,450	17,368
				달성도	125	114
	찾아가는 한국어 찾아가는 한국 교실 교실	찾아가는 한국어		목표치	960	1,092
		교실	명, %	실적치	1,040	1,170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단위	구분	2022년	2023년
				달성도	108	107
				목표치	1,920	2,276
	방과후 멘토링	방과후 멘토링	명, %	실적치	2,168	2,334
				달성도	113	103
				목표치	1,920	2,056
	검정고시 대비반	검정고시 대비반	명, %	실적치	1,958	2,189
				달성도	102	106
				목표치	864	928
	다국어 상담	다국어 상담	명, %	실적치	884	1,014
				달성도	102	109
				목표치	420	457
	진로 특강	진로 특강	명, %	실적치	435	457
				달성도	103	100
		진로 체험		목표치	80	102
상담사업	진로 체험		명, %	실적치	97	102
				달성도	120	100
	가족관계 개선	가족관계 개선	명, %	목표치	130	160
				실적치	152	166
				달성도	117	104
	정서지원	정서지원	명, %	목표치	152	322
				실적치	307	360
				달성도	202	112
	문화예술동아리	문화예술동아리	명, %	목표치	1,350	1,430
				실적치	1,362	1,672
				달성도	101	117
	취기미취	한국문화 이해프로그램		목표치	200	251
	한국문화 이해프로그램		명, %	실적치	239	278
ㅁ히고ㄹ	이에프포그램 			달성도	120	111
문화교류	또래문화 이해프로그램	또래문화 이해프로그램		목표치	200	230
			명, %	실적치	213	230
				달성도	107	100
		송년발표회		목표치	100	112
	송년발표회		명, %	실적치	106	112
				달성도	106	100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3항³)에 따르면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재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총점 100점 중 77.67점으로 재계약 배재 점수(75점) 이상을 획득하였음
 - ※ ▲사업인프라 11.20점, ▲사업활동 5.57점, ▲사업성과 40.13점, ▲지도점검
 이행노력 5.04점, ▲만족도 제고노력 15.73점 등
- 이번 동의안은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다른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을 통한 운영이 효과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음
- 다만, 참여자 수 위주의 정량적 성과지표를 줄이고 사업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다양한 성과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총 위탁사업비(6억 76백만 원)의 50%가 넘는 인건비(3억 75백만 원) 비중은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4)

※ 총 위탁사업비 6억 76백만 원

: 인건비 3억 75백만 원, 사업비 1억 96백만 원, 운영비 1억 5백만 원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39 (2024. 1.)

^{&#}x27;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불가피한 경우(예시) : : "상담, 요양보호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

-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7. 토 론 요 지: 없 음
- 8.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84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한국사회 정착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상담·문화교류 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소 재 지 : (교육센터) 영등포구 문래로 164, SK리더스뷰 501호

○ 시설규모 : 문래교육장(765*m*²)

○ 주요시설 : 강의실, 강당, 휴게실, 상담실 등

○ 인력운영 : 7명(센터장 1, 교육·문화사업 2, 상담사업 1, 회계·행정 1, 취업지원 1, 주말반 운영 1)

※ 운영시간 : 평일 9~18시(주말도 행사 등에 의해 필요시 운영)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25. 1. 1.~ 2027.12.31.)

○ 위탁업무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관리 · 운영 및 사업일체

- · 교육지원(한국어/검정고시/학습 멘토링) 및 문화교류를 통한 적응 지원 등 중도입국청소녀들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
- · 상담사업 등을 통한 심리 · 정서적 안정 지원 등
- 소요예산 : 676.252천원('25년도)
 - 인건비 375,044천원, 사업비 196,217천원, 운영비 104,992천원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24. 7. 19.)

다.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상담·문화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업무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및 제 18조의 2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 7조 · 18조 및 20조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4.〉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2019. 9. 26.〉
-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 7. 외국인주민의 기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기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기족관계 유지를 위한 시업
- 8. 외국인주민 기족 내 기정폭력의 예방 및 기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면자 등의 보호 지원
-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 위탁)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2017. 1. 5.〉

○ 다문화가족지원법 10조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제목개정 2015. 12. 1.〕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9947, 2024.6.24.)

※ 작성자 :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박윤정 (☎ 2133-8689)